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 主要 內容(完)

<6月號에서 계속>

6) 出願公告 節次

審查官이 出願을 審査한 결과 拒絕理由를 발견할 수 없거나 意見書 또는 補正書에 의해 拒絕理由가 극복되면 意匠登録出願 以外의 出願에 대해서는 出願公告 결정을 出願人에게 통지하고 特許公報나 實用新案公報 또는 商標公報에 出願公告를 한다.

出願公告은 出願內容을 일반에 公開하여 異議申請의 기회를 줌으로써 공중의 의견을 審査에 참작하여 審査上의 과오와 審査官의 獨單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다.

7) 異議申請 節次

出願公告된 特許出願 및 實用新案登録出願에 대하여는 出願公告日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特許 또는 登錄을 許與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異議申請을 할 수 있고, 商標登録出願의 경우에는 出願公告日로부터 30일 이내에 異議申請期間이라고 한다.

異議申請은 審査官의 1차 審査를 거쳐 出願公告된 出願에 대하여 第3者가 이를 검토하여 본 결과 特許 또는 登錄될 수 없는理由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拒絕理由 해당사항을 審査官에게 통지하여 審査官으로 하여금 出願公告된 出願을 第3者인 異議申請人의 의견을 참작하여 再審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여, 異議申請은 공중이 審査官의 審査를 보조하여 주는 공중심사라고 한다.

異議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異議申請의 理由와 必要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異議申請期間内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異議申請期間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異議申請의 이유를 變更 또는 追加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보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8) 登錄查定 및 拒絕查定

出願의 審査는 查定에 의하여 종료되며, 查定에는 工業所有權을 許與하기로 하는 特許查定 또는 登錄查定과 工業所有權의 許與를 거부하는 拒絕查定이 있다.

意匠登録出願에 대하여는 出願公告의 절차가 없으므로 異議申請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며, 審査官의 審査 결과 거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登錄查定을 하고, 拒絕理由를 발견하여 意見書를 제출하게 한 결과 拒絕理由가 극복되면 登錄查定을 하고 拒絕理由를 번복할 수 없으면 拒絕查定을 한다.

特許出願과 實用新案登録出願 및 商標登録出願에 있어서는 審査官이 審査한 결과 拒絕理由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審査官이 발견한 拒絕理由가 出願人의 意見書에 의해 극복되면 出願公告 결정을 하며 異議申請期間 중에 異議申請이 없고 審査官도 새로운 拒絕理由를 발견하지 못하면 特許查定 또는 登錄查定을 하게 되고, 審査官의 審査 결과 拒絕理由를 발견하여 拒絕理由를 통지하고 答辯書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拒絕理由를 번복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出願公告後 異議申請이 있어서 出願人에게 答辯書 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異議申請에 理由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拒絕查定을 하게 된다.

特許查定 또는 登錄查定이 되는 경우에는 拒絕查定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拒絕查定不服抗告審判을 청구하지 않으면 拒絕查定이 확정된다.

9) 登錄節次

特許出願에 대한 特許查定 및 實用新案登録出願

또는 意匠登録出願에 대한 登錄查定을 받아 查定書의 등본을 送付받은 出願人은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特許料 또는 登錄料를 納付하고 特許權 및 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 설정의 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내 登錄節次를 跳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納付期間 경과후 6개월(追納期間)내에 그 特許料 또는 登錄料의 倍額을 納付하고 登錄節次를 跳을 수 있다.

商標登録出願에 대한 登錄查定의 통지를 받은 出願人은 查定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년분의 登錄料를 한꺼번에 納付하고 登錄節次를 跳아야하므로 그 登錄料의 納付期間이 特許나 實用新案의 경우보다 짧으며, 追納期間에 있어서는 特許 등과 같이 法定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出願人の 登錄料納付期間廷長 申請에 따라 30일이 이내에 한하여 登錄料納付期間이 연장되며, 그대신 登錄料는 가산금이 없이 동일한 金額을 納付하면 되나 商標權登錄時에는 特許등과 달리 登綠稅와 防衛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5. 工業所有權의 侵害 및 對應方法

工業所有權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民事的인 방법과 刑事的인 방법으로 對應할 수 있다.

民事的인 방법에는 侵害行爲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침해금지 청구권, 고의 및 과실에 의해 權利를 侵害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 利得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과 명성의 褴손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다.

6. 기타 工業所有權制度

1) 각종 審判制度

工業所有權登錄에 있어서 登錄될 수 없는 權利가 잘못 登錄되었다거나 내용해석에 문제 가 있다든가 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審判制度가 있다.

審判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無効審判

登錄되지 말아야 할 부실한 權利가 審查의 잘못으로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第3者가 請求할 수 있는 審判

(2) 權利範圍確認審判

權利와 非權利의 기술간에 귀속여부에 대한 論爭이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이 취할 수 있는 審判

(3) 拒絕不服抗告審判

特許廳에서 審查後 登錄될 수 없다는 이유로 拒絕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는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審判

(4) 訂正許可審判

權利의 내용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불분명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權利者가 취할 수 있는 審判

(5) 取消審判

權利가 생성될 때에는 아무 문제없이 登錄된 것이 추후에 발생한 事由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權利로 되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審判
(이 審判은 商標權에 대해서만 存在함)

(6) 實施權許與審判

特許權者가 지나치게 부당한 理由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實施許諾要請을 거부할 경우 公益을 위하여 타인이 請求할 수 있는 審判 이상의 여러 審判中에서 意匠權에는 訂正許可審判 및 取消審判이 없으며, 商標權에서는 實施權許與審判 및 訂正許可審判이 없다.

2) 實施權 및 使用權制度

住宅이나 土地 같은 不動產을 전세권자나 월세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바와 같이 工業所有權도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對價(통상 이를 '로열티'라고 함)를 받고 대여할 수 있다.

實施權에는 獨占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專用 實施權과 여써 사람이 동시에 實시할 수 있는 通常實施權이 있다. <♣>